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년 1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김태산)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2010. 2.23)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동의 요구내용

-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비고 (임기)
계	8명				
위원 (주민)	이연리	여	55.04.10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21	2010. 2.24 ~ 삼정동소각장 폐쇄시 까지
위원 (시의원)	박노철	남	50.06.28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6-17	"
위원 (주민)	박궁자	여	44.07.0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4-4	"
위원 (주민)	황화자	여	44.05.04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10	"
위원 (주민)	석점숙	여	55.05.2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7-9	"
위원 (주민)	이성자	여	64.10.1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3-15	"
위원 (전문가)	장윤석	남	57.05.11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
위원 (전문가)	김지형	남	62.04.12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제544호
의결 년월일	2010. 1. 20 (제158회)

제출년월일 : 2010. 1.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2010. 2.23)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동의 요구내용

-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비고 (임기)
계	8명				
위원 (주민)	이연리	여	55.04.10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21	2010. 2.24 ~ 삼정동소각장 폐쇄시 까지
위원 (시의원)	박노철	남	50.06.28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6-17	"
위원 (주민)	박궁자	여	44.07.0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4-4	"
위원 (주민)	황화자	여	44.05.04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10	"
위원 (주민)	석점숙	여	55.05.2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7-9	"
위원 (주민)	이성자	여	64.10.1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3-15	"
위원 (전문가)	장윤석	남	57.05.11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
위원 (전문가)	김지형	남	62.04.12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 관계법규 참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관계법규 조문

法	施 行 令																
<p>第17條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p> <p>①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p>②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p> <p>①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②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③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p> <p>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⑦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p> <p>[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 관련)</p> <p>1. 지원협의체의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폐 기 물 매 립 시 설</th> <th colspan="2">폐 기 물 소 각 시 설</th> </tr> <tr> <th>구성면적</th> <th>정원</th> <th>처리규모</th> <th>정원</th> </tr> </thead> <tbody> <tr> <td>100만제곱미터 이상</td> <td>21명 이내</td> <td>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td> <td>15명 이내</td> </tr> <tr> <td>100만제곱미터 미만</td> <td>15명 이내</td> <td>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td> <td>11명 이내</td> </tr> </tbody> </table> <p>2. 지원협의체의 위원</p> <p>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p> <p>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p> <p>※비고 :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p>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